

학교폭력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취소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원명	서울고등법원
사건번호	2017누○○○○○	사건유형	학교폭력
원고	○○○ 외 2명	피고	○○○○학교
판결선고일	2018.01.24.	비고	
사건개요	<p>2016.04.14. 교실 내에서 원고가 같은 반 소외 ●●●가 자신의 책상을 민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소외 ●●●을 밀치고 올라타서 넥타이를 잡고 한 손으로는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소외 ●●●의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잡고 뜯었으며, 원고의 오른쪽 손등으로 소외 ●●●의 안경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쳐낸 행위를 하였음. 이에 따라 2016.04.27.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 사과,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, 학급교체,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하였으나,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2017.06.02. 행정소송을 제기함.</p>		
주 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6.05.03.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처분, 접촉·협박·보복행위금지처분, 학급교체처분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이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		
청구 취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피고가 2016.05.03.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처분, 접촉·협박·보복행위금지처분, 학급교체처분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이수처분을 각 취소한다.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		
판결이유	<p>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하고,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가 있음. ○○○○학교의 학부모회 규약에는 총회소집은 5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피고 ○○○○학교는 총회소집 3일 전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회 규약에 정하여진 발송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집통신문의 회의 목적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, 선출 등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학교폭력위원회 구성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, 위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된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 및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함.(이 사건 처분의 실제적 하자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함.)</p>		
결 론	<p>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.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,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.</p>		